의안번호	2213473
의 뢰 인	이용우의원
회 답 일	2025.10.15.
추계번호	25D5472
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Ⅰ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제27조의2 (주민자치회)	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회의 운영 및 기능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	재량규정

Ⅱ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제27조의2 (주민자치회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❑ 개정안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신설하면서,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자치회의 운영 및 기능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

○ 현재 주민자치회는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」에 설치 근거가 규정되어 있으며[1] 이에 따라 전국 일부 읍·면·동에서는 시범 실시 중임

1)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」 제40조(주민자치회의 설치 등) ①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·면·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(이하 "자치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라 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,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자치회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③ 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1. 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
2. 지방자치단체가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관계 법령, 조례 또는 규칙에서 위임하거나 위탁한 사항
④ 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.
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⑥ 자치회의 설치 시기, 구성, 재정 등 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.
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·운영할 수 있으며, 이를 위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❑ 개정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자치회의 운영 및 기능 수행에 재정적 지원을 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,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으로 규정되어 주민자치회의 조직·규모, 업무 범위 등과 이에 대한 재정 지원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므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곤란함

Ⅲ. 부대의견

❑ 없음

Ⅳ. 작성자

❑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임홍연	김안나

❑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임홍연	02-6788-4673	limhy@na.go.kr